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다만,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

건설기계등록 · 검사증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4. 건설기계검사란
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서울07나5510 담당자 성명
신규등록일 :				
	2016-09-12			
신규(검사)	2016-09-06	2019-09-11	안전관리원경기북부검사소	장중근
정기검사	2019-09-04	2022-09-11	안전관리원경기본부검사소	최서용
정기검사	2022-08-30	2023-09-11	안전관리원강원원주검사소	이성현
정기검사	2023-08-29	2024-09-11	안전관리원강원원주검사소	이성현
정기	2024.08.30	2025.09.11	영서	김응우

5. 등록사항 변경란

연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
※ 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 ※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
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
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